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5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3818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주식회사 [redacted]
	2. [redacted]일차[redacted] 유한회사
	3. [redacted]팔차[redacted]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1.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2. 13. 선고 2014구합6994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7. 8.
판 결 선 고	2015. 8.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신탁(이하 '원고 신탁회사'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5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 1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재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9행의 "달리"를 "달라"로, 제8면 제18행의 "처분"을 "과세처분"으로 각 고쳐 쓰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 신탁회사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가. 원고 신탁회사의 주장

신탁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위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등기명의자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개정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는 실질과세의 헌법상 원칙에 반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 신탁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와 같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

1)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으로서 국가는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 제도의 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5

나가 바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상의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그 경제적 실질을 추구하여 그에 과세함으로써 조세를 공평하게 부과하겠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7. 19.자 2000헌바40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오늘날 세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하에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과세대상 등을 선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제반 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조세법에서 과세대상 등을 선정한 결과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조세평등주의나 재산권보장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2. 24.자 2009헌바203, 2010헌바192, 20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살피건대,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신탁계약상의 의무만을 부담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탁자는 비록 신탁 목적에 의한 제한은 있지만 신탁재산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5

관리, 처분할 권리를 갖추어 사실상 경제적 지배를 함으로써 담세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을 위임하였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규정은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 원고 신탁회사는 이 사건 법률규정이 수탁자의 신탁재산 취득을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의 취지에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보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와 재산의 이전 내지 취득이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취득세를 같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신탁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규정은 지방재정수입의 기본이 되는 조세의 세수확보 또는 징수편의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규정 단서는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개정법 제106조 제3항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5

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탁자별 신탁재산,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서로 합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개정법 제119조의2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처분으로부터 수탁자의 고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요건도 충족되었다.

또한, 이 사건 법률규정으로 인하여 원고 신탁회사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이 사건 신탁자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신탁자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이 가능하게 된 결과 원고 신탁회사의 비용 회수권 등이 침해될 여지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나 개정법 제110조,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시가표준액의 2%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에 불과하고, 수탁자는 납부한 재산세를 신탁사무 처리 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신탁자산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회수할 수 있으므로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수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 세수의 징수를 확보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충실화를 달성하려는 공익과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침해받게 되는 재산권을 비교형량해 보면 이 사건 법률규정으로 인해 수탁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법률규정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원고 신탁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법률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5

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백현

판사 왕정옥

판사 채동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5

1. 과세처분 내역

순번	처분청	부과년월일	피처분자	재산세액
1	[redacted]	2014-07-10	[redacted]	629,670
2	[redacted]	2014-07-10	[redacted]	1,116,280
3	[redacted]	2014-07-10	[redacted]	2,899,500
4	[redacted]	2014-07-10	[redacted]	1,477,270
5	[redacted]	2014-07-10	[redacted]	4,325,400
6	[redacted]	2014-07-10	[redacted]	133,950
7	[redacted]	2014-07-10	[redacted]	202,780
8	[redacted]	2014-07-10	[redacted]	268,770
9	[redacted]	2014-07-10	[redacted]	134,800
10	[redacted]	2014-07-10	[redacted]	268,770
11	[redacted]	2014-07-10	[redacted]	260,090
12	[redacted]	2014-07-10	[redacted]	134,800
13	[redacted]	2014-07-10	[redacted]	134,800
14	[redacted]	2014-07-10	[redacted]	134,800
15	[redacted]	2014-07-10	[redacted]	134,800
16	[redacted]	2014-07-10	[redacted]	260,090
17	[redacted]	2014-07-10	[redacted]	134,800
18	[redacted]	2014-07-10	[redacted]	260,090
19	[redacted]	2014-07-10	[redacted]	134,800
20	[redacted]	2014-07-10	[redacted]	133,950
21	[redacted]	2014-07-10	[redacted]	134,800
22	[redacted]	2014-07-10	[redacted]	134,800
23	[redacted]	2014-07-10	[redacted]	259,410
24	[redacted]	2014-07-10	[redacted]	134,800
25	[redacted]	2014-07-10	[redacted]	15,540,810
26	[redacted]	2014-07-10	[redacted]	14,831,940
27	[redacted]	2014-07-10	[redacted]	4,867,550
28	[redacted]	2014-07-10	[redacted]	2,398,650
29	[redacted]	2014-07-10	[redacted]	5,438,860
30	[redacted]	2014-07-10	[redacted]	6,439,250
31	[redacted]	2014-07-10	[redacted]	202,780
32	[redacted]	2014-07-10	[redacted]	134,800
33	[redacted]	2014-07-10	[redacted]	134,800
34	[redacted]	2014-07-10	[redacted]	134,800
35	[redacted]	2014-07-10	[redacted]	133,950
36	[redacted]	2014-07-10	[redacted]	260,090
37	[redacted]	2014-07-10	[redacted]	134,8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5

38	[redacted] 시 [redacted] 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 [redacted]		134,800
39	[redacted] 시 [redacted] 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 [redacted]		134,800
40	[redacted] 시 [redacted] 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 [redacted]		134,800
41	[redacted] 시 [redacted] 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 [redacted]		134,800
42	[redacted] 시 [redacted] 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 [redacted]		134,800
43	[redacted] 시 [redacted] 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 [redacted]		134,800
44	[redacted] 시 [redacted] 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 [redacted]		260,090
45	[redacted] 시 [redacted] 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 [redacted]		134,800
46	[redacted] 시 [redacted] 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 [redacted]		268,770
47	[redacted] 시 [redacted] 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 [redacted]		134,800
48	[redacted] 시 [redacted] 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 [redacted]		133,950
49	[redacted] 시 [redacted] 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 [redacted]		134,800
50	[redacted] 시 [redacted] 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 [redacted]		134,800
51	[redacted] 시 [redacted] 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 [redacted]		268,770
52	[redacted] 시 [redacted] 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 [redacted]		134,800
53	[redacted] 시 [redacted] 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 [redacted]		260,090
54	[redacted] 시 [redacted] 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 [redacted]		134,800
55	[redacted] 시 [redacted] 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 [redacted]		268,770
56	[redacted] 시 [redacted] 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 [redacted]		133,950
57	[redacted] 시 [redacted] 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 [redacted]		134,800
58	[redacted] 시 [redacted] 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 [redacted]		260,090
59	[redacted] 시 [redacted] 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 [redacted]		260,090
60	[redacted] 시 [redacted] 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 [redacted]		293,370
61	[redacted] 시 [redacted] 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 [redacted]		358,510
62	[redacted] 시 [redacted] 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 [redacted]		133,950
63	[redacted] 시 [redacted] 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 [redacted]		134,800
64	[redacted] 시 [redacted] 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 [redacted]		134,800
65	[redacted] 시 [redacted] 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 [redacted]		134,800
66	[redacted] 시 [redacted] 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 [redacted]		133,950
67	[redacted] 시 [redacted] 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 [redacted]		134,800
68	[redacted] 시 [redacted] 구청장	2014-09-10	주식회사 [redacted]		629,670
69	[redacted] 시 [redacted] 구청장	2014-09-10	주식회사 [redacted]		457,814,490

순번	처분청	부과년월일	피처분자	재산세액
1	[redacted] 시 [redacted] 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 [redacted]	12,000
2	[redacted] 시 [redacted] 구청장	2014-09-10	주식회사 [redacted]	208,324,560

끝.